

#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CONTENT

1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4
2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8
3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16
4화	묵시적 갱신	24
5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28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6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4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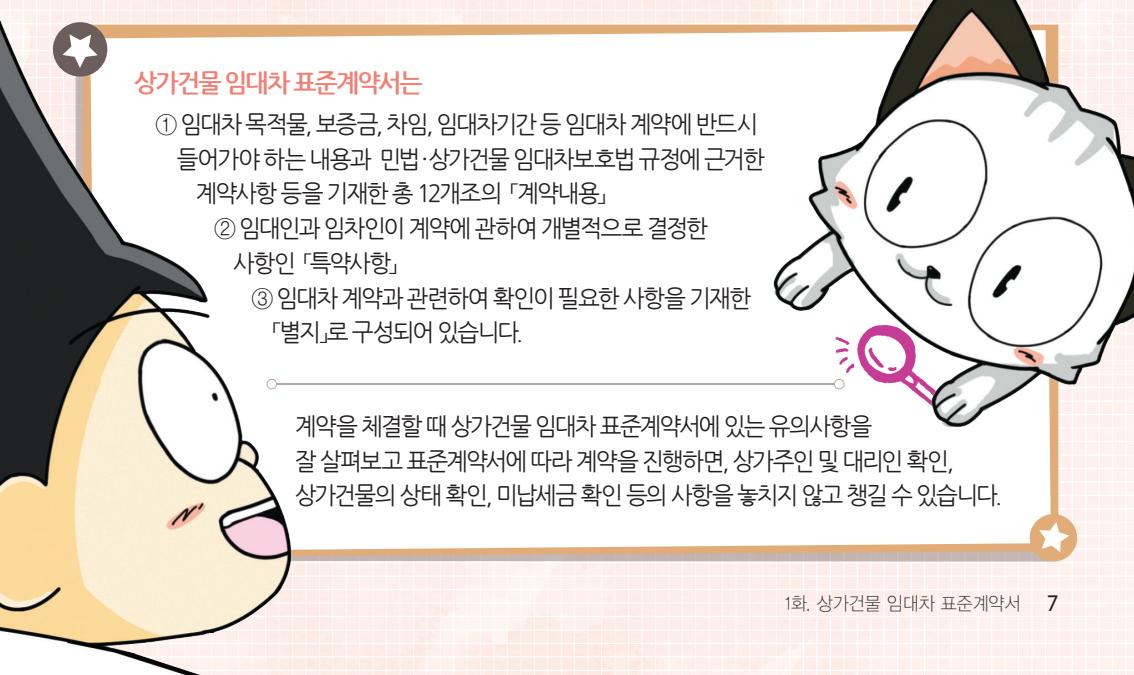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발행일 2016년 12월 | 발행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전화 02-2110-3164 | 팩스 02-2110-0325  
편집·인쇄 에듀윌 02-539-8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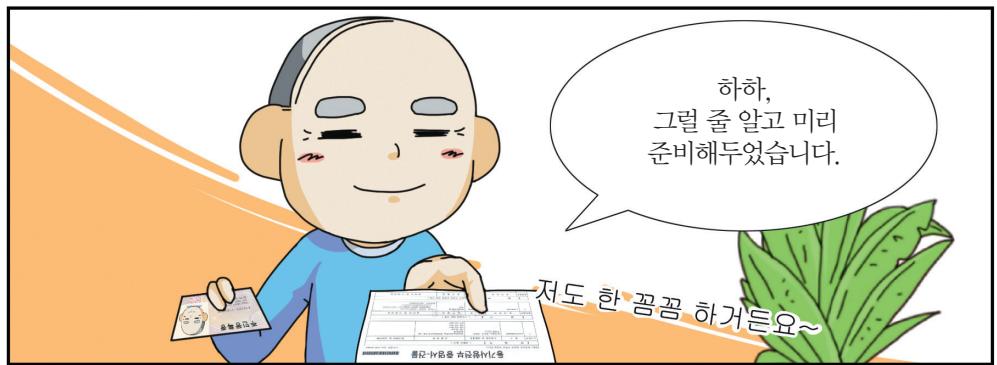
## • 1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 • 2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권리금 포기 특약은 강행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설령 특약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오~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잘 설득해 보아야겠네.

정확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확정일자 신청은 꼭챙기세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된 보호 내용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해당 상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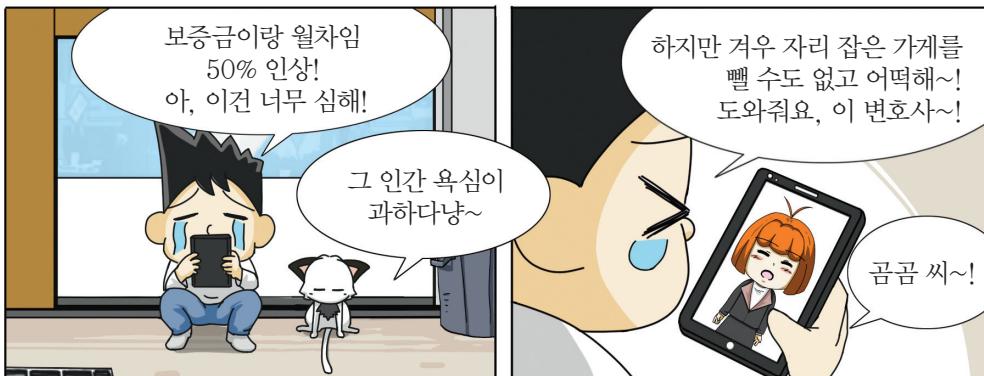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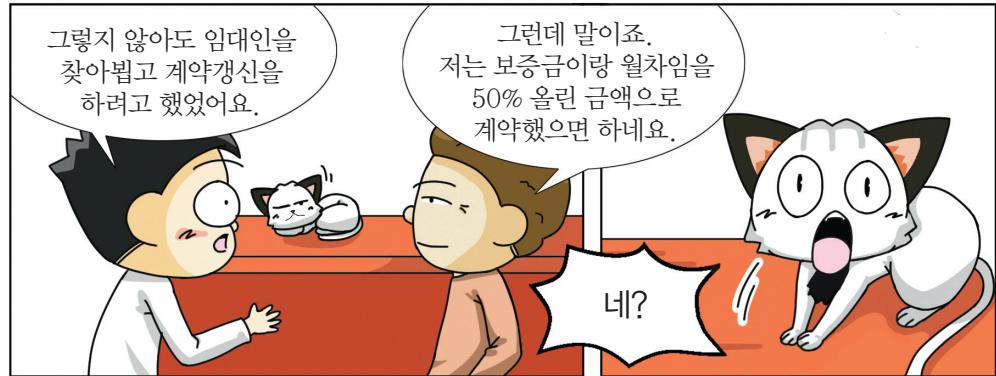
만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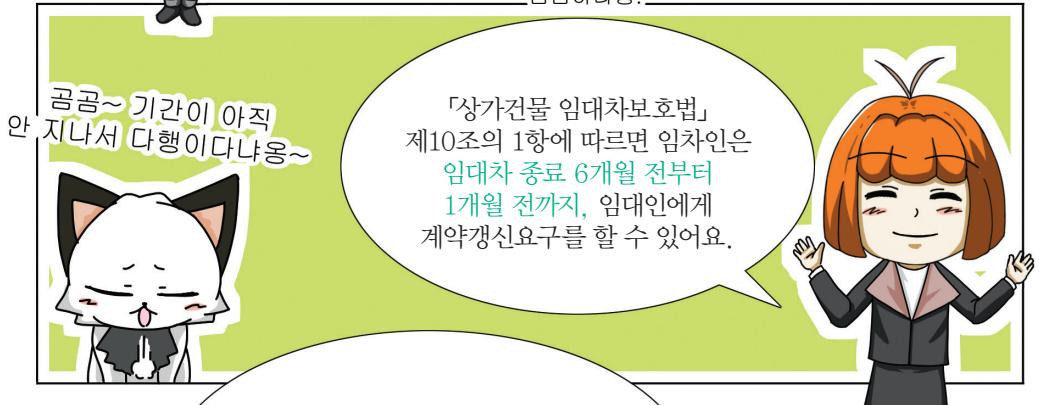
\* 대항력 :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가건물을 인도 받은 경우, 그 이후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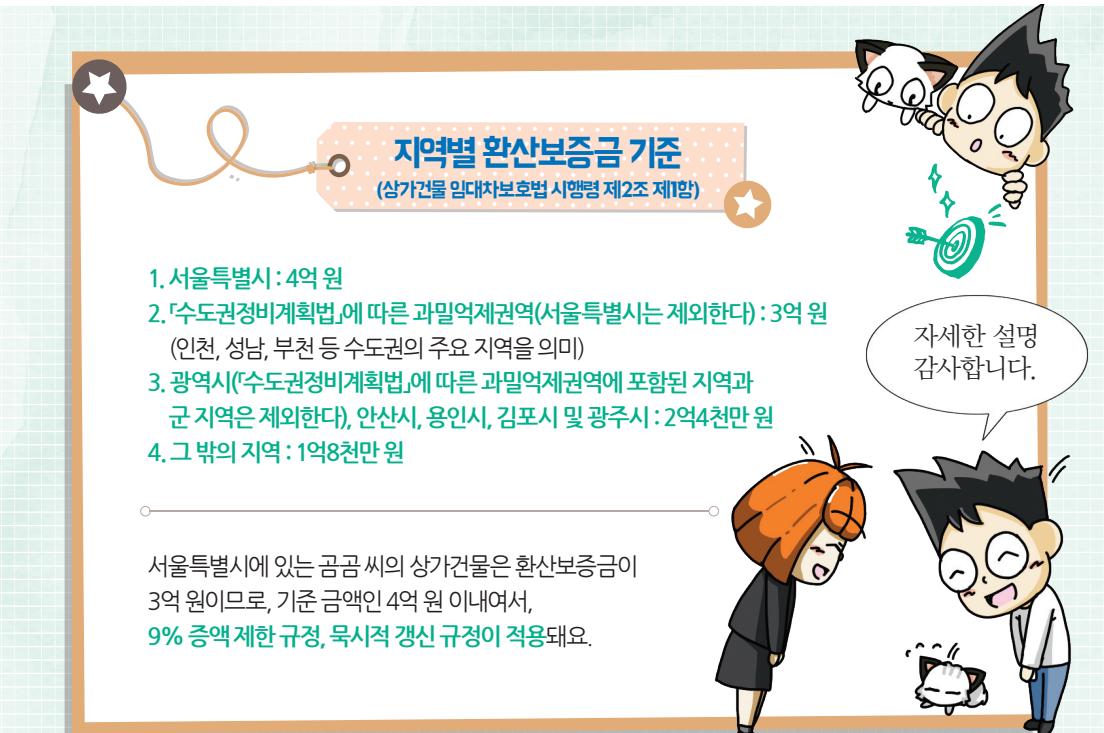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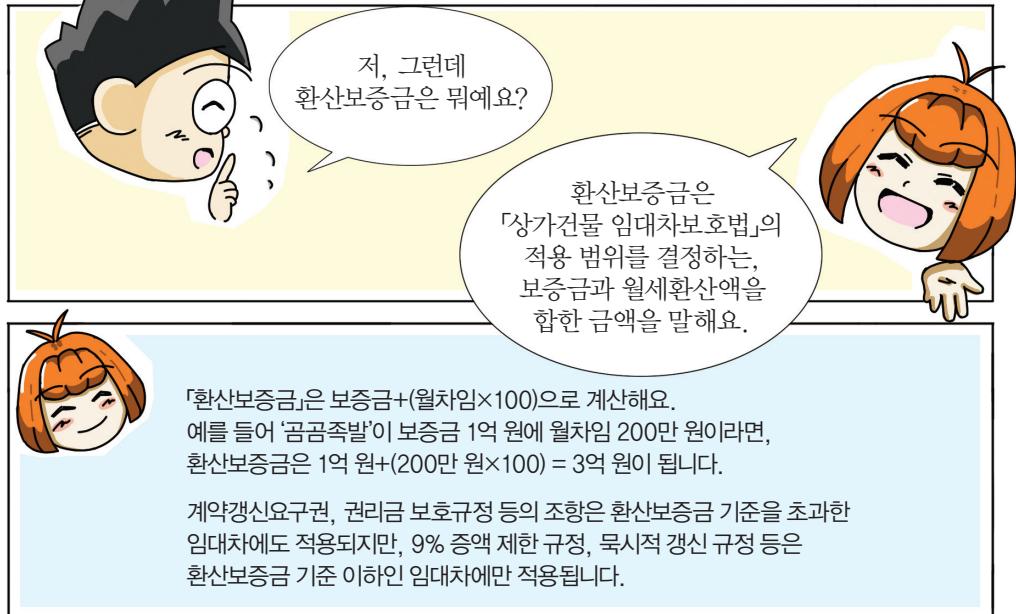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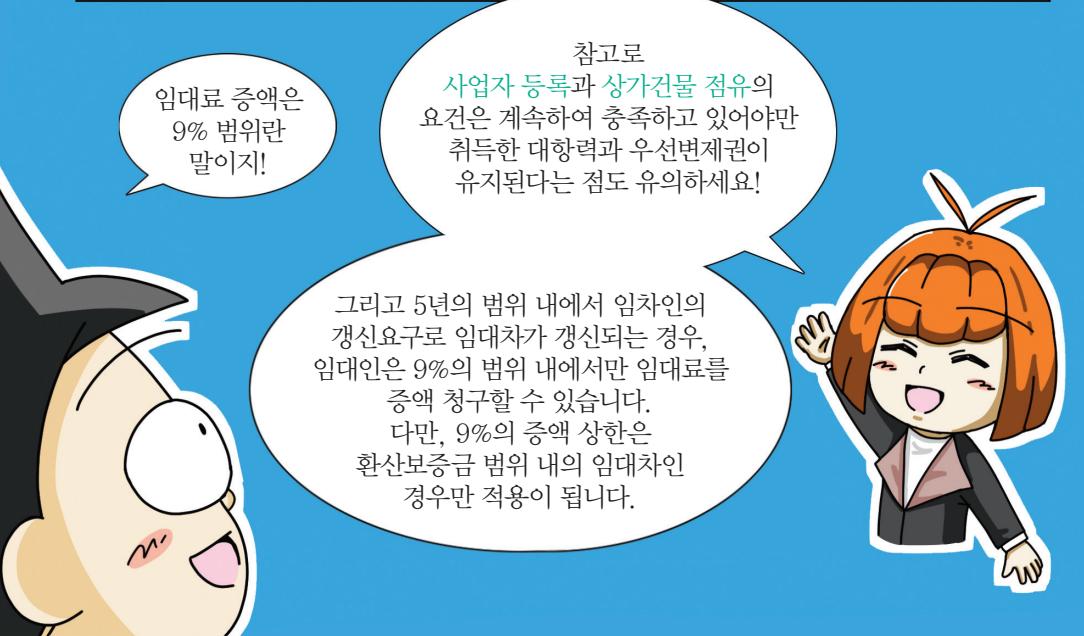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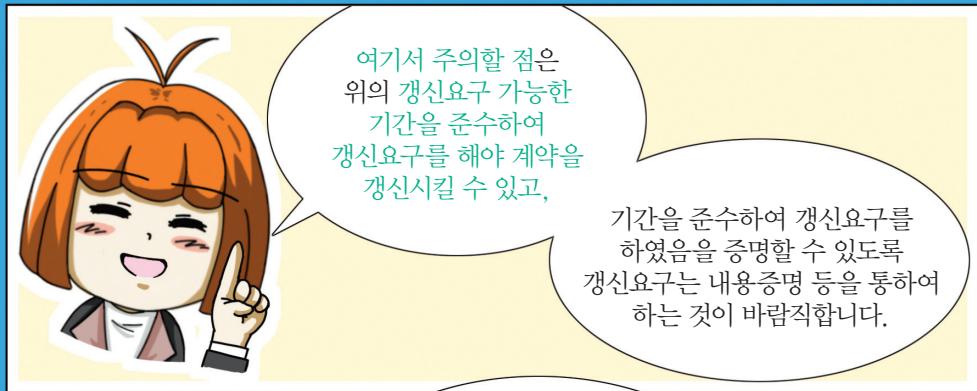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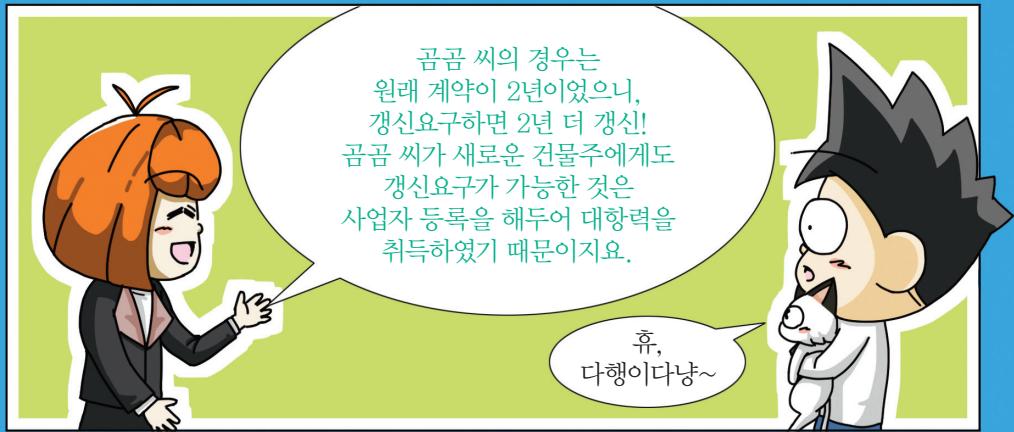
\* 우선변제권 : 만약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그 경매의 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합니다.

## 3화. 대항력과 갱신요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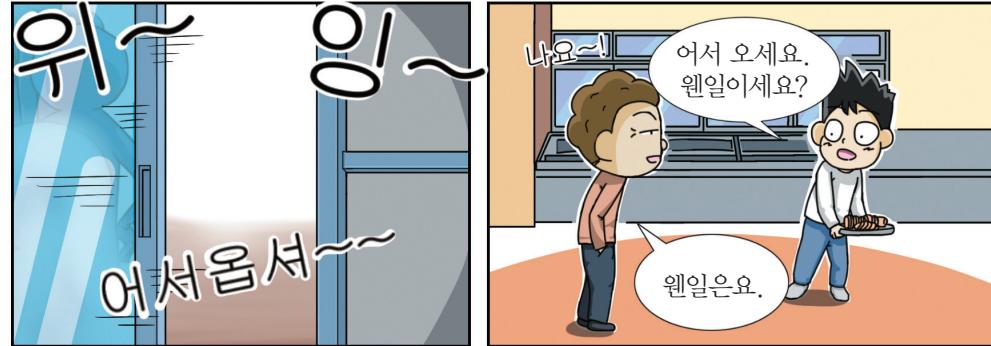








## 4화. 뮤시적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규정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읽어 봐라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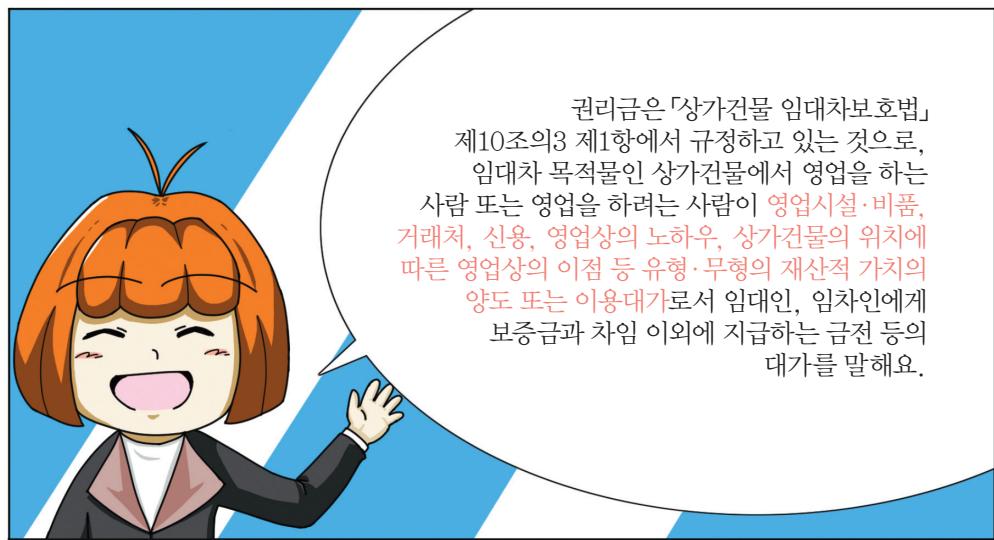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갱신거절이나 임대료 증액 등의 언급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하면, 임대차기간 종료부터 다시 1년의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는 적어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고서, 이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으로서는 점포 이전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 계약이 갱신될 것을 신뢰한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참고로 이렇게 묵시적으로 1년간 임대차기간이 갱신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년의 기간을 보장 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갱신된 기간 중 언제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용이 많지만  
읽다가 졸면 안 된다옹~  
옴나~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그와 권리금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전 3개월 동안의 기간적 요건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권리금 계약에 계약금 등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부당하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개념을 법제화**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두어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6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







## 〈주의하세요!〉

- ①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종료 전 3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② 그리고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③ 법 제10조의4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 하여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 ④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하여야만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니 주의하세요!

중요한 내용이니  
잘 읽어 봐라옹~

###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는 임차인의 간신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